

## 98. 일반·특별회계에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9. 28

나. 제안자 : 부천시청

다. 에결특위 상정 및 심사 의결

○ 상정 : 1999. 10. 8

○ 심사 및 의결 : 1999. 10. 9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세무국장 김인규)

가. 제안이유

○ 98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예비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 회의 승인사항임.

나.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원)

구 분	지출건수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잔 액
계	16	4,098,078,830	4,030,785,400	67,293,430
일 반 회 계	12	3,979,061,000	3,911,767,570	67,293,430
공기업특별회계	4	119,017,830	119,017,830	0
공 영 개 발	1	73,276,440	73,276,440	0
하수도사업	3	45,741,390	45,741,390	0
기 타 특 별 회 계		해 당 없 음		

##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 4. 토론요지

○ 생략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생략

98.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안번호	제217호
의결년월일	99. 10. 12 (제73회)

제출년월일 : 1999. 9. 28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0조(예비비)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임

2. 승인근거

○ 지방자치법 제12조(예비비)제2항

3. 주요골자

가. 예비비 지출 총괄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예 비 비	구성비 (%)	지출 전수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잔 액
일반회계	316,474,798,000	7,759,501,000	2.5	12	3,979,061,000	3,911,767,570	67,293,430
특별회계	257,285,472,000	17,561,028,000	6.8	4	119,017,830	119,017,830	0

나.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 : 불입

다. 관계법령 발췌서 : 불입

##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원)

사업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지출사유
계 12건		3,979,061,000	3,911,767,570	67,293,430	
손해배상금지급	98. 2. 2	101,000,000	100,197,410	802,590	1995. 10. 21 소명지하차도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한 대법원 97다 44584호 손해배상소송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역곡고가교 긴급 보수공사	98. 3. 12	182,000,000	181,000,000	1,000,000	1998. 3. 8 원미구 역곡2동 소재 (역곡성심) 고가교 파손사고에 따른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보수비 지출
「부천인력은행」사 무실 임차료 지급	98. 4. 6	420,000,000	420,000,000	0	IMF 후 대량실업발생으로 인한 실업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부천인력은행」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한 임차료 지급
부당이득금 지급	98. 4. 18	12,700,000	12,629,770	70,230	소사구 소사동 산32의4 임야에 설치된 도로의 사유재산 점유 및 사용과 관련한 인천지법 부천지원 97가단11319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부당이득금 지급	98. 5. 8	8,056,000	8,055,430	570	원미구 도당동 217-4에 설치된 도로의 사유재산 점유 및 사용과 관련한 인천지법 부천지원 97가단 2445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부당이득금 지급	98. 5. 16	149,931,000	149,930,880	120	소사구 소사본동 68-37 외 18필지 사유지를 시가 공도로 점유, 사용함과 관련한 인천지법 부천지원 96가합3998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사업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지출사유
공공근로사업 (1단계) • 본 청 • 원미구 • 소사구 • 오정구	98. 5. 22	1,654,343,000	1,653,960,000	383,000	실업대책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98년도 일반·특별세입세출예산 총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예비비 지출
간부공무원 위탁교육 실시	98. 7. 16	14,000,000	13,948,020	51,980	제2기 민선시장 출범과 구조조정 등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간부공무원 위탁교육 훈련비 집행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지원	98. 8. 11	18,744,000	16,833,810	1,910,190	1998. 8. 5 경기북부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민방위대수해복구지원계획(경기도, 98. 8. 7)에 의해 고양시 수해복구지원 소요경비 집행
도로절개지 유실에 따른 응급복구	98. 9. 20	9,580,000	7,002,400	2,577,600	1998. 8. 집중호우에 따른 원미구 춘의동 산14-15번지 일원 도로절개지 유실 긴급복구비 집행
수해지역 응급복구용 장비임차	98. 9. 1	65,450,000	14,450,000	51,000,000	1998. 8. 집중호우에 따른 원미구 춘의동 산14-15번지 일원 도로절개지 추가긴급복구에 따른 수해복구 장비 임차료 집행
공공근로사업 (2단계) • 본청 • 원미구 • 소사구 • 오정구	98. 9. 25	1,343,257,000	1,333,759,850	9,497,150	실업대책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98년도 일반·특별세입세출예산 총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예비비 지출

특 별 회 계

(단위 : 원)

사 업 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지출사유
계 4건		119,017,830	119,017,830	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4건)		119,017,830	119,017,830	0	
상 수 도 사 업		0	0	0	
	해 당 없 음				
공 영 개 발 사 업		73,276,440	73,276,440	0	
미보상토지 보상금 부족분 지출	98. 6. 1	73,276,440	73,276,440	0	중동택지개발지구 내 미보상토지의 보상금 부족분 지출
하 수 도 사 업		45,741,390	45,741,390	0	
역곡천 개수공사관련 부당이득금	98. 4. 23	32,953,600	32,953,600	0	역곡천 개수공사시 편입토지에 대 한 이득금 지출
침수피해 손해배상금	98. 5. 9	9,200,000	9,200,000	0	95.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금 지출
역곡천 편입토지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월임료 지급	98. 12. 18	3,587,790	3,587,790	0	역곡천 편입토지에 대한 월임료 지 출
기 타 특 별 회 계		0	0	0	
	해 당 없 음				

## 관 계 법 령 발 책 서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내 용

제120조(예비비)

-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